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7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소희・백종헌

박덕흠 • 김도읍 • 최수진

엄태영 · 조정훈 · 서미화

김미애 · 김장겸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,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 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,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.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·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)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 애인의 스포츠시청권(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 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)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18조의4(장애인의 스포츠시청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(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)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
	정적·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 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